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실책임조사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대상 확대〉

■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470호)

2022. 5.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부실책임조사 대상 확대	2
2.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대상 확대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은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2. 1. 19.
3. 회 부 일 : 2022.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실책임 관련 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개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부실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면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7항 및 제21조의4제1항).

Ⅲ. 검토의견

1. 부실책임조사 대상 확대

□ 개정안은 부실책임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법무법인,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용역제공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 ⑥ (생략)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⑦ ----- ----- ----- ----- ----- ----- ----- ----- -----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법무법인,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용역제공자-----.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⑧ ~ ⑩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로 하여금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제1항), 부실금융회사등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항), 부실금융회사등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제4항).¹⁾

○ 이때 부실관련자란, ① 부실금융회사등의 전·현직 임직원, ②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집행 지시자 등,²⁾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③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소를 제기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 ④ 그 밖의 제3자를 의미함.

□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손해배상청구 요구·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³⁾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이하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1조의2제7항).

○ 이에 근거하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조사 제도가 도입된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총 3조 2,55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청구 요구를 포함)하여 1조 7,038억원 규모에 대하여 승소를 거두었고, 7,012명에 대하여 44조 8,557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금액에 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2)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3) 현행법은 이해관계인을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자 및 전득자(轉得者), 그 밖의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실책임조사 현황

(단위: 개, 명, 억원, %)

구 분	손해배상청구			부실책임심의		
	피고수	소송청구액	승소액	관련 회사수	부실 관련자수	부실책임 조사금액
금융회사	9,715	22,734	12,543	519	6,122	301,460
채무기업	1,191	9,820	4,495	384	890	147,097
계	10,906	32,554	17,038	903	7,012	448,557

(자료: 예금보험공사)

□ 현행법은 부실책임조사의 대상으로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2002년 법 개정⁴⁾에 따라 부실책임조사의 대상이 관련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등의 부실관련자로 확대되었는데,⁴⁾ 이 법에 따른 부실관련자의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과도한 조사권 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보임.⁵⁾

□ 개정안은 부실책임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

4) 2002년 법 개정 이전에는 부실책임조사의 대상이 부실금융기관등과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었음.

5)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2002.10.

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다른 전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조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최근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등 다양한 전문용역제공자의 조력
을 통해 불법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음에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에 대해서만 현행법에 따른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효과적인 부실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는 지적이 있고,⁶⁾

현재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외 전문용역제공자의 경우 검찰의 협
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실관련자와의 거래관계
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전문
용역제공자의 금융회사 부실 초래 관련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개정안은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변호사·감정
평가사 등 전문용역제공자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조력하거나
방조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
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6)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금융법학회 정책심포지엄, ‘금융부실책임조사 20년의 성과 및 미래 발전방향’, 2021.12.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부실관련자의 불법행위가 법률·회계 등 전문용역의 조력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제3자”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전문용역제공자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입법정책적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임.

2.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대상 확대

☐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u>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u>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 ----- ----- ----- ----- ----- ----- ----- ----- ----- ----- ----- ----- <u>부실관련자</u> ----- ----- ----- -----.

현행	개정안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1조의4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7)에도 불구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 등의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하 “부실관련자등”)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일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을 규정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이 2006년 신설된 이후 2021년까지 부실관련자 69만 1,051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5조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8,724억원(53만 740건)에 대하여는 압류(가압류 포함) 등 채권보전조치를 완료하고, 2,346억 원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회수한 바 있음.

[표 2] 일괄금융거래 조회실적

(단위 : 명, 건, 억원)

연도별 (기간별)	조회인원 ¹⁾	채권보전조치 실적(연말 기준)		강제집행 등을 통한 회수액 ³⁾
		(가)압류 건수	(가)압류 금액 ²⁾	
‘06년~‘08년	56,757	38,821	1,088	42
‘09년	29,903	47,414	1,556	135
‘10년	44,352	52,421	1,881	248
‘11년	48,713	40,599	1,601	25
‘12년	83,094	46,732	2,992	73
‘13년	98,532	87,710	7,323	311
‘14년	40,043	30,067	9,439	238
‘15년	84,697	31,978	6,684	192
‘16년	34,133	40,930	8,132	210
‘17년	60,688	55,001	9,614	112
‘18년	46,274	45,054	7,751	71
‘19년	15,604	3,754	379	334
‘20년	38,325	8,022	110	177
‘21년	9,936	2,237	174	178
합계	691,051	530,740	58,724	2,346

1) 부실관련자 중 부실책임자 및 채무원금 1천만원 이상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조회 실시

2)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가압류하게 되므로, 가압류 금액은 발견된 계좌잔액 또는 실제 회수금액보다 훨씬 큼

3) 금융자산 발견 후 최종 회수까지 채권보전조치, 소송 등으로 인해 약 1~3년 소요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대상에는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나,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계사, 회계법인 및 기타 전문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참고로,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이 2006년 도입될 당시에는 부실관련자 모두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조회권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과다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⁸⁾
- 개정안은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도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용역제공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보험공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관여가 가능한 회계사, 변호사 등과 금융회사 간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임.

8)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8.11.

□ 다만, 부실책임자 중 ‘그 밖의 제3자’를 모두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2009년 법 개정 당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그 범위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확대하여 부실 추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행법상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요구대상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21조의2 제7항과 같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3